

「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」

제 안 설 명

□ 의안번호 제154호

「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
□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을 이행하기 위하여,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출연 전에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.

□ 출연 대상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해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으로, 출연금액은 2023년도분 26억 4천 3백만원이며,

-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수입결산액에 1만분의 1.2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.
-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우리시의 출연은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법정사항으로 동 연구원 운영에 중요한 재원이 되며,
 - 동 연구원은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 방안 및 세제개선 과제의 이론적 뒷받침을 위한 연구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.
-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-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2022. 9. 20.

서울특별시 재무국장 정헌재